

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(제9조제3항관련)

1.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
2. 다음의 혈액선별검사(血液選別検査)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

검 사 종 목	부적격기준
간기능검사(ALT 검사)	65 IU/L 이상
B형간염검사(HBsAg 검사)	양 성
C형간염검사(Anti-HCV 검사)	양 성
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(Anti-HIV 1/2 검사)	양 성
매독검사	양 성

3. 제2호의 혈액선별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과거의 혈액선별검사 결과 양성(매독검사를 제외한다)판정을 받은 혈액. 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혈액을 제외한다.
 - 가. B형간염 확인검사(HBsAg 중화시험) 결과 음성인 혈액
 - 나. C형 확인검사(Anti-HCV면역브롯검사) 결과 음성인 혈액
4.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(溶血)된 혈액
5.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
6.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
7. 기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혈액